

[별지 제58호서식] <개정 2009.12.2>

☐ 사업정지 ☐ 운행정지				처분 자동차표시증	
자 동 차 번 호					
소 속					
정 지 기 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			
이 자동차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9조에 따라 사업(운행)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입니다.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이 표시증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. 년 월 일 시 · 도 지 사 직인					

182mm×128mm[보존용지(1종) 70g/m²]